##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0 발의연월일 : 2024. 9. 13.

발 의 자: 박범계 · 임오경 · 이강일

백승아 • 채현일 • 장종태

추미애 · 송재봉 · 황운하

조승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 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 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서울고등법원"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u>서</u>	<u>대</u>
<u>울고등법원</u> 을 전속관할로 한다.	전고등법원